

# 원장 일반직무교육 운영 계획안

(2026. 06. 04.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)

## 1. 「원장 일반직무교육(기본과정)」 운영 개요

### ○ (필요성 및 목적)

- . 영유아보육법 제 23조(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)
- .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0조(보수교육 실시)에 근거
- .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지원

## 2. 교육 안내

### ○ (교육기간) 2026. 07. 20.(월) ~ 07. 29.(수), 8일 (32시간, 18:50~22:00 (야간교육))

### ○ (교육대상)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및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

### ○ (교육인원) 70명 (대기인원 5명)

### ○ (교육장소) 울산대학교 문수관(10호관) 203호 강의실 (대면 교육) zoom (비대면 교육)

### ○ (교육경비) 1인 총 80,000원 (교재비 별도)

- \* 교육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(연말 환급)
- \* 교육비 납부는 교육 대상자 확정 후, 별도 안내 예정
- \* 교재: [공동체] 어린이집 원장 일반직무교육 2판(기본과정)/ 개별 구매/ 교내 구내 서점 판매

## 3. 신청 안내

### ○ (신청순서) ① 보육교직원통합정보 접수 ② 제출 서류 메일 발송 (PDF 파일로 전송)

### ○ (접수기간) 2026. 06. 22.(월) 21:00 ~ 06. 25.(목) 23:59

### ○ (접수서류)

- ①교육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③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경력증명서 ⑥면제신청서(+수료증)

### ○ (접수방법) 메일 접수 [icare17@naver.com](mailto:icare17@naver.com)

- 1) 접수 시 파일명은 원장일반직무교육 홍길동
- 2)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별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발급 신청 사이트 : 정부24
- 3) 면제신청서는 정확한 기입과 서명 필수

#### 4. 교육 운영 안내

- 1) 안전교육(4시간) 수업 포함 최대 8시간 면제가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면제받고자 하는 해당 과목  
수료증과 면제신청서 제출 후 처리
- 2) **안전교육은 미개설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사전 이수가 완료가 필수**
- 3) 서류제출 기간 내 면제신청서와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인정

#### 5. 교과목별 교육 방법

| 영역                       | 교과목                    | 시간        | 교육방법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인성·소양<br>(8시간)           | 보육철학과 직업윤리 I           | 4         | 비대면 교육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I        | 4         | 비대면 교육 |
| 건강·안전<br>(4시간)           |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I          | 4         | 비대면 교육 |
| 전문<br>지식<br>기술<br>(20시간) | 영유아 관찰과 평가 지원 I        | 4         | 대면 교육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 중재 I   | 4         | 대면 교육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유아 발달 지연과 부적응 행동 지도 I | 4         | 대면 교육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I          | 4         | 비대면 교육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모-교직원 관계 형성과 협력 I     | 4         | 비대면 교육 |
| <b>총 시수(8과목)</b>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<b>32</b> |        |

#### 6. 기타 사항

##### ○ (수업관리)

- 출결 사항 범위 지정
  - 1) 결강: 해당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  - 2) 조퇴: 수업 개시 30분 이후, 조퇴 3회는 결강 1회
  - 3) 지각: 수업 개시 5분 후, 지각 3회는 결강 1회
- 제적 처리 : 교육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분할 수 있음
  - 1) 교육 기간 내 교육 시간을 모두 마치지 않는 자
  - 2) 직계가족의 사망,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의 결석은 교육 시간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  - 3) 본인의 뜻에 따라 교육하지 않은 자
  - 4)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
  - 5)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

7. 문의처 :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/ ☎ 052-259-2060